

2025 인천가구박람회 참가신청서

9. 25 목 9. 28 일 송도컨벤시아

인천 사무국 T_032-571-5186, F_ 032-431-8846, H_010-5266-8548, 010-5410-7421 서울 사무국 T 02-546-5200 F 02-546-5205

■ 참가업체 정보 (기업정보 필수 입력란입니다. 빠짐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공장유무	유/무	
참가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도 첨부하여 보내주십시오.					
소재지(매장)					
소재지(공장)					
전 화			팩 스		
전시회 담당자	성명 :		휴대폰 :		email :

※ 추후 전시회 준비와 관련한 모든 안내는 상기 전시회 담당자에게 전달되오니 핸드폰 번호와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담당자	성명 :	휴대폰 :	E-mail :
-----------	------	-------	----------

※ 반드시 세금계산서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 참가신청 내역

구분		부스 형태	신청내역		단가(VAT포함)	금액	비고
필수 사항	9월 9. 25(목) - 9. 28(일)	독립부스 (9부스만 신청)	인천소재 업체	부스	660,000원	원	※ 독립부스(면적만 제공) - 독립부스를 신청하고 별도 부스 벽체 시공을 원할 경우 별도 비용 발생.
			타지역 업체	부스	770,000원	원	
		조립부스	[공통]	부스	1,650,000원	원	※ 부스 벽체, 조명, 바닥파이텍스, 인포데스크/의자 1세트 제공
선택 사항		전 기	전력	kw	77,000원/kw	원	※ 공사비 및 사용료 포함. ※ 독립부스는 바닥 면적만 제공되며 - 조명설치, 콘센트추가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24시간	kw	220,000원/kw	원	
		인터넷		회선	330,000원/회선	원	
		급배수		개소	330,000원/개소	원	

■ 신청내역

브랜드명	업종	결제방식	금액(VAT포함)
ex) 00가구	ex) 제조/도매/소매 등	ex) 카드 / 계좌이체	ex) 5,940,000원

■ 매장운영(사진첨부) 사진첨부가 어려울 시 별도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1(전경)	사진2(내부사진)
ex) 간판이 확실히 나오게	ex) 매장이 나올수 있게

2025 인천가구박람회 참가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1부 반드시 첨부)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참가신청서 접수 후 계약금 납부일까지 50%가 입금 완료 되어야 하며, 잔금납부 기한까지 입금 완료가 된 업체에 한하여 부스추첨에 참석 하실 수 있습니다.)

(9월행사) 계약금납부(50%) : 25년 7월 31일(목), 잔금납부(50%) : 25년 8월 29일(금)

2025 인천가구박람회 귀중 ★ 팩스접수 FAX_02-546-5205

2025 인천가구박람회 참가신청서

9. 25 목 9. 28 일 송도컨벤시아

전시회 참가규정

제 1 조(용어의 정의)

1. '참가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사)인천가구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전시회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24 (사)인천가구발전협의회를 말한다.
4. '주관자'라 함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21 한화비즈메트로2차 1209호 소재 (주)페어스컴을 말한다

제 2 조(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최자/주관자가 제작한 소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비의 50%를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될 경우와 참가 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 3 조(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주관자는 참가횟수, 신청접수의 순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참가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주관자의 재량이며, 참가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전시실 관리)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또는 주최자/주관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주최자/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참가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을 하는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최자/주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참가비의 납입)

1. 참가업체는 참가신청 후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7월31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50%는 8월 29일(금)까지 납입 완료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주관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 조(해약)

1. 참가자 사정에 의한 참가취소는 주최자/주관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취소시점에 따른 참가취소 위약금이 발생한다.
 - 전시회 개최 60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50%
 - 전시회 개최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70%
 - 전시회 개최 30일 전부터 개최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100%
2. 지불된 참가취소 위약금은 1년 이내에 (사)인천가구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전시회에 한하여 참가비로 유예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전에 주최자/주관자와 협의가 있어야만 한다.
3.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참가자는 주최자/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 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참가자는 지정된 전시 면적 내에 지정 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의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전시장 부스 내 음향기구를 이용한 홍보 시 음원으로부터 반경 1m 이내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 기준으로 75db(데시벨)을 넘을 수 없다.
65db이상 75db미만의 음향 홍보 활동은 1시간 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타 업체의 상담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준 수치 초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최자/주관자는 해당 부스의 전원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참가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전시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이로 인해 주최자/주관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9 조(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

1. 주최자/주관자는 참가자 및 관람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신청면적 내 장치물과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가 진다.
3.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여 주최자/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최자/주관자는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장치와 전시물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 10 조(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및 방염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보충규정)

1. 주최자/주관자는 필요할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자에게 공시되는 순간부터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주관자와 참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